서면4차 봄여름가을겨울 입주자모집공고 - 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의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별도의 운영 정책이나 그로 인해, 거리두기, 방문 교역 입장 관리가 있을 예정이며, 정책에 준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예약 공정정당정책(해바라기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공급계약 체결 등)은 추후 홈페이지(www.xn면4차봄여름가을겨울.com)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 청약 및 공급계약 등 추후 분양일정에 일반 고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정보 등 분양관련 사항은 홈페이지(www.xn면4차봄여름가을겨울.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4차 봄여름가을겨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을 ☎051-245-0045을 실시하고 있으나, 긴급 특수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청약의 합리적 표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안내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본 사업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본주택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정고자로부터 청약자는 자격 여부에 따라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7.2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연수 등의 청약자격조건은 해당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신용억사 부산진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밀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 (해외 속한 분도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신용억사 부산진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밀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마다 2번주택 관람,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인지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청약)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의 비투기과밀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주택과 비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이매물 민양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그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청약	7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이 입주자모집공고로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9.)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거나 출신향역시 및 경남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의 부,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도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2022.07.2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체류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부산광역시시 부산진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자는 상대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및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등일국가 체류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체류해외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 있어서 모집공고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거나 질병치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주주택세대구성원이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예) 전처-자녀 등
* "주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말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도 포함(높은 주택수 기준)하여 입주자 선정하는 주택수 보다 사항만 미흡의 소지나이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하게 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및 제2조의4에 의거 주택분양권도 포함(높은 주택수 기준)하여 입주자 선정하는 주택수 보다 사항만 미흡의 소지나이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하게 됨.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6조, 제8조,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 및 제2조의4에 의거 주택분양권도 포함하여 주택수 기준 적용하게 됨.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거 주택분양권도 포함하여 주택수 기준 적용하게 됨.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 및 제2조의4에 의거 주택분양권도 포함하여 주택수 기준 적용하게 됨.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 및 제2조의4에 의거 주택분양권도 포함하여 주택수 기준 적용하게 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및 제2조의4에 의거 "소득·자산 주택수" 운정정권을 포함하여 공급하게 되며 이에 따른 주택수 기준 적용하게 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및 제2조의4에 의거 "소득·자산 주택수" 운정정권을 포함하여 공급하게 되며 이에 따른 주택수 기준 적용하게 됨.
■ 청약자는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어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절차, 방법,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입주전 및 도시개발 부지 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인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인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인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인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인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필요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및 자산기준	-	-	적용	적용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정착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인프라에 대한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터넷 청약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신규공인증서, 은행공인증서, 휴대폰본인확인서를 또는 은행모바일뱅킹서비스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비스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APT포함) / 민영APT / 민영오피스텔	O	O	O	O
	O	O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수용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순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본 주택의 해당순위에 속하는 분은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모집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이내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인,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5조 규정에 의거 제3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도록 청약 및 공급계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비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도록 청약 및 공급계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비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도록 청약 및 공급계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제한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통장 :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제한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통장 : 청약예금 가입일자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자
*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2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6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를 발급받은 분.
(단, 가주택구성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자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대상자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검증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시장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등 - 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던 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 가격이 비로 위층 주택의 분양 가격이 비로 위층 주택의 분양 가격이 비로 위층 주택의

서면4차 봄여름가을겨울 입주자모집공고 - ②

Ⅵ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건물주재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모전면허증, 여권 등 * 제9조제1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동거자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자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일자) 등의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의 내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동거자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항, 제 23조 2항 7호에 의거 해외거주자가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을 목적을 직접 출국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증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및 확약서	본인	• 건물주재에 비치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 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목적을 조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자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장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북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근복무기간이 명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 건물주재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기준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주기 확인 위한 필수 제출(상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일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제8 가항의 자녀세대분배우자의 건준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 대상자 시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해당 가족으로 등록이 없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자녀	• 본인 : 만19세 미만에 혼인하여 유주택자인 경우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 자녀 : 만19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		입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입신진단서)제출 입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입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서	본인(또는 배우자)	• 건물주재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신고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혼인신고일 확인 상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상명, 주민등록번호포함하지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조회기간 : 생년월일부터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해당자 본인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제2조 가항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현재 배우자임이 증빙 가능 하는 서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서	본인(또는 배우자)	• 건물주재에 비치(임신한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부동산 소유현황 및 공급 순차별 자격소득분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등도 공급 순차별 자격소득분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의 해당 공급자의 자격소득분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의 해당 공급자의 자격소득분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의 해당 공급자의